

[기획조사 04-15]

WTO/DDA 비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 리스트 분석

2004. 5

통 상 전 략 팀

<목 차>

I . WTO/DDA 비농산물 분야 논의동향	1
II . WTO/DDA 비농산물분야 비관세장벽 리스트 분석	4
1. 개관	4
2. 국별 · 품목별 · 유형별 분석	8
III. 결론	16

I. WTO/DDA 비농산물 분야 논의동향

□ 협상목표

- 과감한 관세인하 : 선진국의 첨두관세(tariff peaks) 및 미소관세, 개도국의 고관세 제거
 - UR 수준이상의 관세인하가 목표
-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장벽 제거
- 양허품목 대폭 확대
 - 공산품 외에 임산물과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어 난항

□ 협상경과

- 02.12월까지 관세인하방식(Modalities)에 대해 19개국 26개 제안서 제출
- 03.5월 관세인하방식 합의시한 준수를 위해 비농산물 분야 의장이 관세인하 방식 초안을 제시하였으나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로 합의도출 실패
- 03.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구체적 공식이나 수치가 포함되지 않은 framework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렬
⇒ 그러나 향후 협상에서 동 의장초안은 논의의 출발점으로 고려
- 04.3월 의장단 전면 교체 후 협상이 제네바에서 재개
 - 기존의 전체회의를 자제
 - 이슈별 복수국간 협의 및 양자회의를 위주로 협상이 진행

□ 주요 쟁점

1) 관세인하 방식

- 의장초안에 제시된 비선형공식(non-linear formular)에 대하여 선·개도국 모두 수용가능 입장
- 의장초안 수정안에서 제시된 변형된 스위스 공식을 위주로 논의 전개
 - $t_1 = [Bxt_a x t_0] / [(Bxt_a) + t_0]$ (t_1 =최종관세율, t_a =평균관세율, t_0 =기준관세율)
 - * B 가 클수록 관세감축폭이 작아지며, 평균관세율(t_a)이 클수록 감축폭이 작아지는 특성을 가짐.
 - 이는 각국의 현행 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경제발전정도 또는 현재의 관세율 수준을 반영토록 하면서도 시장접근 개선효과가 큰 방식이나, 실제 감축정도는 공식에 사용할 조정계수(B)의 크기에 달려 있음.
- 선진국 : 개도국 우대가 지나치게 강조(평균관세율 사용)된 것이라는 불만 제기
 - 선진국은 스위스 공식(단일계수) 선호
 - 조정계수(B)를 0에 가깝게 정하자는 의견 제시
 - 평균관세율이 높은 개도국의 시장접근 개선이 미흡하다는 입장
- 개도국 : 동 공식이 저율관세보다 고관세의 감축율이 커 개도국 우대 반영이 미흡하다고 주장
 - 감축률에 있어 선·개도국간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
 - 개도국들은 차별적 계수를 사용하는 Girard 공식을 선호
- 중국, 대만 등 신규 가입국들은 가입 당시 상당수준 감축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감축의무 경감 주장

- 우리나라는 “공식적용 + a”를 통해 공식을 적용하되, R/O 방식 등 유연한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기를 희망
- 선·개도국간 단일 관세인하공식을 사용하여 중국, 동남아, 인도, 멕시코 등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큰폭의 관세장벽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비선형 공식 : 저율관세는 감축률이 낮고, 관세가 높을수록 감축률도 높아지는 공식 ※ 스위스 공식 : 비선형공식으로, 계수에 의해 감축률이 결정(계수가 작을수록 감축률이 커짐) ※ Girard 공식 : 스위스 공식의 변형으로, 계수에 각국의 관세평균 (Ta) 요소가 결합되어 평균관세가 낮은 선진국(2~4%)보다 개도국(20~40%)이 훨씬 유리한 방식

2) 분야별 무세화

- 미국, 일본, 캐나다, EC 등은 구체적인 무세화 대상분야를 제시하고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제시
- 미국은 해당분야 수출입량의 90% 이내 국가들의 강제 참여 방안 고려 (critical mass) → 미참여국에게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의거 무세화혜택 제공 가능하다고 언급

※ UR에서 결정된 무세화 분야 (2004년까지 관세 철폐) : 농업장비, 건설장비, 가구, 의료장비, 종이, 의약품, 철강, 완구

- 개도국은 관세인하방식에 대한 합의를 한 후에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분야별 무세화를 추진하자는 입장
- 의장 초안 수정안 : 회원국의 의무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개도국에 대한 적절한 신축성 부여를 전제로 7개 분야를 분야별 무세

화 대상으로 제시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무세화 이행단계의 차별화를 제안

- 7개 분야 : 수산물, 섬유 · 의류, 자동차 부품, 전기 · 전자제품, 신발, 가죽제품, 보석 및 귀금속
- 선진국은 이행 1단계 말에 관세 철폐
- 개도국은 이행 1단계 말에 10% 이하로 감축, 2단계에서는 수준 유지, 3단계 말에 이를 철폐

○ 우리나라는 무세화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의무적 참여를 확보하되, 민감품목인 임 · 수산물은 무세화 대상에서 제외 주장

3) 비관세 장벽

○ 관세분야에 비해 논의가 부진하나 비관세 장벽의 범위, 처리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별 이견이 비교적 크지 않은 분야

- 현재 29개국(우리나라 포함)이 제출한 비관세장벽 리스트를 기초를 논의 진행

○ 의장 초안 수정안 : 비관세 장벽 협상이 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

- 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 다루기로 합의된 비관세 장벽은 R/O방식, 분야별 접근, 다자적 협상을 통해 처리
- 기타 WTO의 규범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은 해당 협상그룹에서 처리하고 비농산물 협상그룹에 통보

4) 개도국 우대조치 (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선진국 : 선진국과 개도국은 동일한 관세인하폭, 감축의무, 이행기간 적용을 주장

- 개도국 : 기본적인 개도국 우대, 일정범위 내에서 미양허 유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분야별 무세화 추진 등 폭넓은 S&D 조치 주장
 - 특히 최빈개도국은 관세감축 의무면제와 자국 수출품에 대한 선진국의 무관세 무쿼터 확대 주장

□ 향후 협상전망

- 향후 논의는 관세인하방식(Modalities)과 분야별 무세화 범위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
 - 2004.5월 현재 회원국간 뚜렷한 입장변화는 없는 상태
 - 그러나 대다수가 서로의 입장을 이미 숙지하고 있으며, 협상 모멘텀 유지가 중요하다는데 공감
 - 7월 개최되는 일반이사회의에서의 framework 합의를 위해 우호적 분위기 유지
- 관세인하 공식 결정이 난제
 - 선진국은 스위스 공식을 염두에 두고 비차별적인 적용 주장
 - 개도국은 차별적 계수 부여 등 특별대우 요구
- 분야별 무세화 관련,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은 전 회원국의 의무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대상범위 확대를 주장
 - 특히 캐나다는 의장 초안에 제시된 품목 외에도 임산물, 비료, 에너지 관련 장비, 비철금속을, 뉴질랜드는 임산물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
 - 개도국은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

II. WTO/DDA 비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 리스트 분석

1. 개관

☐ 비관세장벽(NTBs; Non-Tariff Barriers)에 대한 논의 진행

- 비관세장벽을 협상의 주요 분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회원국간 합의
 - 회원국들은 2004.10.31일까지 비관세장벽을 통보한 후, 이에 관한 확인, 분류작업을 거쳐 협상을 진행할 예정
- 비농산물 협상그룹이 비관세장벽 협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음을 전제

☐ 비관세장벽의 범위(scope)

- 비관세장벽의 유형에 따라 적정한 논의의 장을 결정할 것을 제안
- 현재까지 제출된 제안서들은 비관세장벽을 4개의 범주로 구분
 - i) 기존협정과 관련되고 협상 Mandate가 없는 분야
(관세평가, 수입허가, 위생검역, 기술장벽 등)
 - ii) 기존협정과 관련되고 협상 Mandate가 있는 분야
(반덤핑, 보조금 등)
 - iii) DDA의 기타 협상분야와 관련되는 분야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서비스 등)
 - iv) 기타 비관세장벽
(쿼터, 수출세 및 수출제한, 국산품 구입운동 등)

□ 비관세장벽의 처리

- R/O(Request & Offer) 방식, 수직적/분야별 방식, 수평적/다자적 방식으로 처리
 - R/O(Request & Offer) 방식 : 다자적 접근 가능
 - 수직적/분야별 방식 : 임산물, 섬유 및 의류, 자동차, 수산물 등이 이 방식에 의한 협상 가능 분야로 제시
 - 수평적/다자적 방식 : 기술규제, 적합성평가, 수량제한 등이 이 방식에 의한 협상 가능 분야로 제시

□ 각국 비관세장벽 리스트 제출 현황

- 2004.4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국이 총 1,664건의 비관세장벽 리스트 제출
 - 자국 기업이 교역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리스트를 작성하여 WTO에 제출
 - 필리핀, 뉴질랜드, 중국이 각각 398건, 334건, 276건으로 최다 비관세장벽 사례를 통보

<국별 WTO/DDA 비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 리스트 제출 현황>

국명	NTB 건수	국명	NTB 건수	국명	NTB 건수
아르헨티나	27	노르웨이	143	마카오	1
호주	28	파키스탄	7	스위스	36
방글라데시	20	필리핀	398	대만	14
홍콩	10	세네갈	1	우루과이	9
인도	15	싱가포르	46	중국	276
일본	22	태국	8	말레이시아	60
요르단	2	트리니다드 토바고	4	불가리아	8
케냐	6	터키	40	크로아티아	8
한국	62	미국	20	이집트	27
뉴질랜드	334	EC	4	멕시코	27

자료원 : WTO Documents

- 국별 보고 건수의 차이는 각국이 품목별로 비관세장벽을 보고하는데 있어 품목 분류 개념이 상이한 데서 비롯
 - “전자”로 품목을 분류한 국가가 있는 반면, 전자제품을 HS 6단위로 세분하여 각각 1개 품목으로 분류한 국가도 상존
 - 또한 “전품목”, “일부품목”, “대부분의 품목”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도 있음.
- 또한 자국 기업들로부터 수집한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고 일일이 나열하여 보고 건수가 많아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
- 금번 WTO에 통보된 리스트에는 해당 비관세장벽을 운영하는 국가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음.
 - 실제 확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명을 함부로 거론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반영
- 우리나라는 총 62건의 비관세장벽 사례를 WTO에 제출
 - 자동차, 섬유 등에 대해 기술장벽, 통관절차 등의 비관세장벽 사례 통보
 - 단, 기존 별도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사례는 동 리스트에서 제외
 -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동 사례들의 실제 여부 및 우리 기업에의 영향을 조사하여 협상 자료로 활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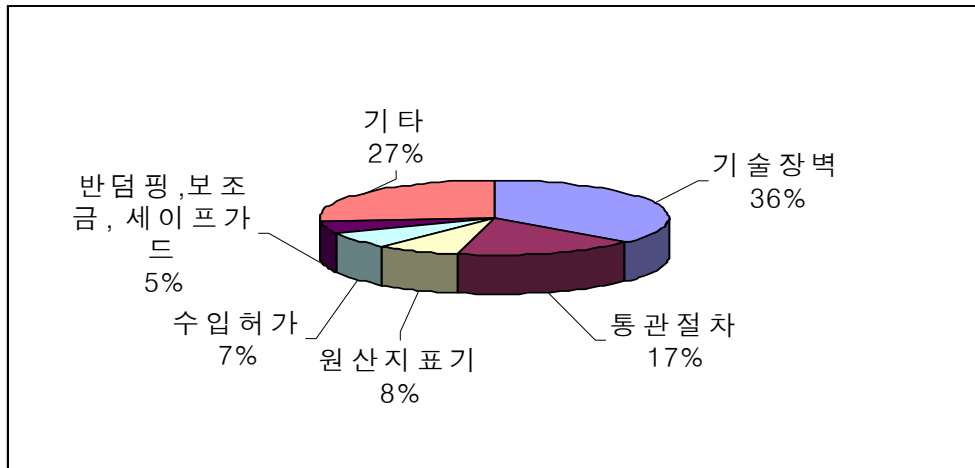
2. 국별 · 품목별 · 유형별 분석

☐ 유형별 분석

- WTO 회원국이 통보한 비관세장벽의 유형은 기술장벽(3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 밖에 통관절차(17%), 원산지표기(8%),

수입허가(7%), 반덤핑·보조금·세이프가드(5%)가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으로 나타남.

<WTO에 통보된 비관세장벽 유형별 분류>



- 관세평가, 수량제한 등도 주요 비관세장벽의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유통망 제한, 복잡하고 높은 내국세 구조 등도 교역상 장벽으로 기능

<비관세장벽 유형별 통보 건수>

유형	건수 (건)
기술장벽	612
통관절차	275
원산지표기	128
수입허가	110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88
관세평가	65
수량제한	53
판매, 유통제한	46
위생검역	44
복잡하고 높은 내국세	42
선적전 검사	35
외환관리법	16
정부조달	13
기타	137
합계	1,664

- 비관세장벽 유형 중 가장 많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기술장벽은 안전기준, 기술기준, 라벨링, 환경인증, 포장요건 등이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
 - 안전기준 : 인체에 대한 무해 입증 요건
 - 기술기준 : 표준, 적합성일치
 - 라벨링 : 에코라벨 등
 - 환경인증 : 자연보호 상품 인증, 유해물질(맹독성 중금속, 아조염료 등) 사용금지, 폐가전 및 폐차 처리 등
 - 포장요건 : 재활용 가능 제품 사용
- 통관절차와 관련된 비관세장벽 사례는 통관비용 과다, 시간 지연, 복잡한 절차 등이 해당
- 동 유형들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이유
 -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 초래 (선진국의 높은 기술표준, 안전기준의 의무화 등)
 - 복잡한 절차 (지나친 서류요구, 통관 지연 등)
 - 투명성 부재 (자의적 운영, 빈번한 규정 개정 등)
 - 외국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기회의 불평등 (필요요건 정보를 자국 언어로만 공고)

□ 국별 유형별 분석

- 현재까지 30개국이 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의 유형은 각기 다르게 나타남.
 - 이는 각국의 주요 교역품목과 교역 상대국이 상이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유형이 각각 다른 것으로 추측
 - 그러나 기술기준, 통관절차 등은 각국 공통으로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 사례로 파악

<WTO에 통보된 비관세장벽의 국별·유형별 분석>

국명	유형	건수	국명	유형	건수	국명	유형	건수
아르헨티나	라벨링	5	필리핀	원산지표기	110	우루과이	라벨링	3
	수입허가	3		기술기준	56		수량제한	2
	기타 ^{주)}	20		라벨링	49		기타	4
호주	기술기준	6		수입허가	38	중국	안전기준	121
	관세할당	3		기타	145		기술기준	42
	기타	19	세네갈	위생검역	1		관세평가	34
방글라데시	수량제한	4		통관절차	15		반덤핑	23
	수입허가	2	싱가포르	기술기준	7		수입허가	20
	기타	14		수입허가	5		기타	36
홍콩	기술기준	3		기타	19	말레이시아	기술기준	15
	통관절차	3	태국	라벨링	4		통관절차	7
	기타	4		기타	4		선적전검사	4
일본	차별대우	5		기술기준	2		기타	34
	통관절차	3	트리니다드 토바고	기타	2	불가리아	복잡한세제	2
	관세평가	3		세이프가드	9		수입허가	2
	기타	11		통관절차	8		기타	4
케냐	환경인증	2	터키	반덤핑	7	크로아티아	기술기준	2
	기타	4		기타	16		원산지기준	2
	기타	4		통관절차	5		통관절차	2
한국	기술기준	17	미국	기술기준	4	이집트	기타	2
	통관절차	14		기타	11		기술기준	5
	기타	31		수출제한	2		수입허가	4
뉴질랜드	통관절차	73	EC	기타	2	멕시코	라벨링	3
	기술기준	43		수량제한	1		기타	15
	안전기준	38		통관절차	11		보조금	9
	기타	180	스위스	기술기준	4		관세평가	5
노르웨이	통관절차	100		기타	21		수입허가	3
	선적전검사	23		기술기준	4	요르단	기타	10
	기타	20	대만	관세평가	4		기술기준	2
파키스탄	위생검역	2		기타	6			
	기타	5						

주 : 동일 건의 복수 유형은 각각 1개 유형으로 집계하여 국별 통보건수 합계와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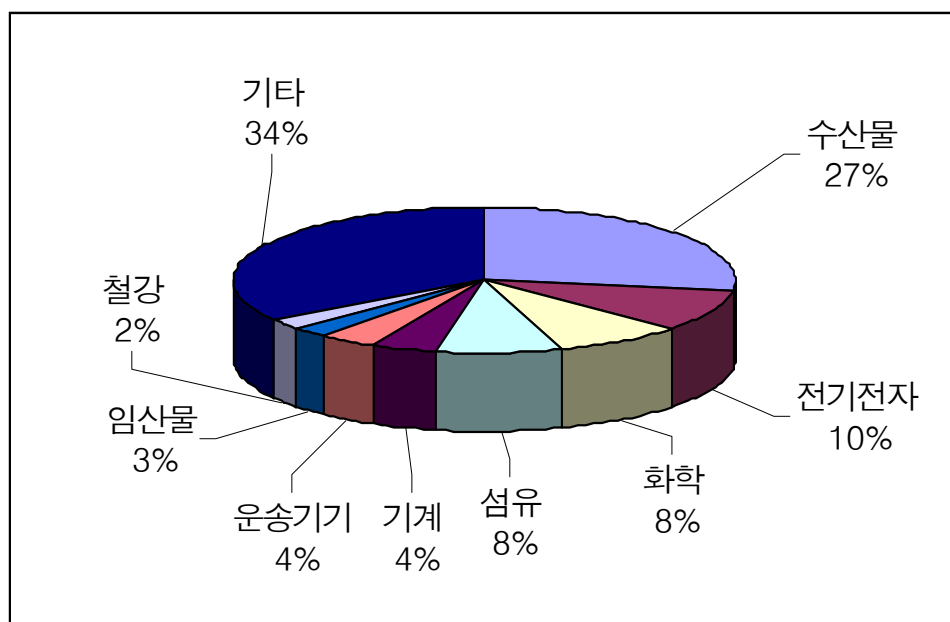
- 현재까지 리스트를 제출한 30개국은 국별로 제기한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기준, 통관절차, 라벨링 등이 가장 빈번한 비관세장벽으로 대두

- 중국의 경우 최근 자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집중 제기
-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의 까다로운 기술표준, 복잡한 통관절차 등이 원활한 교역활동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통보

□ 품목별 분석

- 총 1,664건의 비관세장벽 통보 건수 중 품목명이 기입되어 있는 사례는 1,383건이며, 구체적으로 품목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는 1,326건임.
 - 품목별로 분류하지 않고 비관세장벽 유형만을 통보하거나, “일부 품목”, “전품목”, “공산품” 등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음.
- 품목별로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이 통보된 분야는 수산물, 전기전자, 섬유, 화학 등임.

<WTO에 통보된 비관세장벽 품목별 분류>



- 수산물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필리핀, 뉴질랜드가 이 분야에서 품목을 세세하게 분류하여 일일이 열거했기 때문
 - 전기전자, 화학, 섬유, 기계, 운송기기(자동차), 철강 등 주요 교역품목에 비관세장벽 통보 사례가 집중

□ 주요 품목별 유형별 분석

- 주요 품목별 비관세장벽 유형은 기술기준, 원산지표기, 통관절차, 수량제한 등으로 나타났음.

<주요 품목별 비관세장벽 유형>

품목명	NTB 유형	통보건수	품목명	NTB 유형	품목명
수산물	기술인증	126	기 계	기술인증	40
	원산지표기	88		선적전검사	5
	라벨링	44		복잡한세제	3
	위생검역	32		관세평가	2
	기타	132		기타	14
전기전자	기술인증	95	운송기기	기술인증	12
	수입허가	12		수량제한	6
	통관절차	10		수입허가	6
	환경인증	8		원산지표기	6
	기타	23		기타	28
화 학	기술인증	43	임산물	통관절차	9
	통관절차	20		기술인증	9
	수입허가	11		수량제한	4
	라벨링	9		유통제한	4
	기타	49		기타	13
섬 유	관세평가	35	철 강	반덤핑	12
	기술인증	15		세이프가드	7
	라벨링	10		보조금	4
	수량제한	8		선적전검사	2
	기타	69		기타	12

- 주요 품목에서 기술인증 유형이 가장 많은 사례로 통보되었으며, 통관절차, 라벨링 등도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꼽히고 있음.

- 전기전자, 기계, 화학, 운송기기 등은 까다로운 표준과 인증마크 시스템이 교역상 장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기전자, 기계 등은 EU의 CE마크를 보고한 사례가 다수
 - 아울러 기술규정과 표준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자국어로만 공고 하여 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전기전자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으로 통보된 환경인증은 주로 폐가 전처리지침의 강제 시행을 지적했으며, 운송기기 분야에서도 폐차 처리지침이 일부 통보되기도 했음.
- 원산지표기는 수산물과 운송기기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되고 있음.
 - 수산물은 어획선박의 국적에 따른 원산지 분류 규정이 각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됨으로써 나타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
 - 운송기기(자동차) 분야의 원산지표기는 로컬 콘텐츠 규정(예: NAFTA 원산지 규정)에 관련된 사항이 다수
- 섬유분야에서 제기된 관세평가는 일부 국가의 수입쿼터 운용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나타남.
 - 쿼터 규제 대상 및 비대상 품목의 세번분류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의 견해차 발생
- 수산물, 섬유, 화학에서는 공통적으로 제품의 라벨링이 불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수반하여 비용과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
- 임산물의 경우 수입국 내 지정된 유통망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제한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
- 철강제품은 전통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 규제조치가 빈번하게 적용되었던 품목으로 비관세장벽 유형에서도 이들 조치가 가장 많이 제기됨.

□ 국별 품목별 분석

- 국별 비관세장벽 통보 품목 분포는 대부분 전자, 섬유, 운송기기, 화학 등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이 자국 주력 수출품목인 광물, 수산물, 임산물 등에서 집중적으로 비관세장벽을 통보

<국별 비관세장벽 통보 품목>

국 명	품 목	국 명	품 목
아르헨티나	철강, 섬유, 화학, 식품 등	태국	수산물 등
호주	화학, 광물, 섬유, 목재 등	트리니다드 토바고	식료품, 전자
방글라데시	화학, 섬유, 식품 등	터키	철강, 식료품, 화학, 섬유 등
홍콩	섬유, 식품, 전자 등	미국	전자, 운송기기, 섬유 등
인도	수산물, 가죽, 섬유 등	EC	섬유 등
일본	운송기기, 섬유, 전자 등	마카오	섬유
요르단	광물	스위스	기계, 섬유 등
케냐	섬유, 수산물, 전자	대만	철강, 화학, 전자 등
한국	운송기기, 화학, 섬유, 기계, 철강 등	우루과이	화학, 섬유 등
뉴질랜드	수산물, 임산물, 가죽 등	중국	전자, 섬유, 기계, 화학 등
노르웨이	* 품목명 언급없음	말레이시아	화학, 기계, 전자 등
파키스탄	섬유 등	불가리아	화학 등
필리핀	수산물, 섬유, 운송기기 등	크로아티아	전자, 화학
세네갈	수산물	이집트	광물, 가죽, 섬유 등
싱가포르	화학, 전자, 플라스틱 등	멕시코	섬유 등

-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중국 등이 각 교역국과의 교역 시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고 통보한 품목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현재까지 통보된 비관세장벽 리스트는 1차 통보이며, 향후 동 사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각국별로 이루어질 예정

Ⅲ. 결론

- 현재까지 30개국으로부터 통보된 비관세장벽 리스트는 각 국의 주요 교역품목 및 교역 상대국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됨.
 - 향후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동 사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
-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미국과 중국이 운용하는 비관세장벽에서 비롯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들 국가와의 협상이 업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까다로운 기술인증, 복잡한 통관절차 등이 각국으로부터 공통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이들 조치는 다자적 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단,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취해지는 조치(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수량제한 등)에 대해서는 해당국과의 협상, 타 회원국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작업
 - 비슷한 여건을 가진 회원국과의 공조 필요
- 비관세장벽은 해당 국가의 제도 및 관행과 직결되는 사항인 바, 품목별(수평적) 협상보다는 국별·품목별로 다각적 이해관계 정립이 필요한 R/O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